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허10514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상무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메이저

담당변리사 김선영

변론종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3. 1. 18. 2021당25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하다)을 취소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커튼봉 고정구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0. 4. 20./ 2020. 12. 22./ 제30-1088740호
- 3) 디자인권자: 피고
- 4)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 나. 확인대상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커튼봉 고정구
 - 2) 디자인의 도면: [별지 2]와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2021. 8.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565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23. 1. 18.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반면, 차이나는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커튼봉 고정구는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커튼봉 고정구의 기본적인 형상이거나 창틀에 고정하거나 하중강도를 갖기위한 디자인의 기능적 형태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창틀 고정부 노브의 형상, 창틀 고정부 노브 결합공, 밀착판 결합공의 개수 및 그 위치, 연결부의 모양, 연결부 격벽의 형상, 커튼봉 안착부단면의 형상 등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가 상당한 노력으로 창작한 것으로, '상하 2단으로 결합된 원모양의 커튼봉 안착부', '직육면체모양의 창틀고정부', '커튼봉 안착부가 창틀고정부의 수직 연장선 밖으로 돌출하도록 연결하는 연결부'가 결합한 형상과모양은 종래 커튼봉고정구에 관한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참신한 것이므로, 그 중요

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와 같은 모티 브를 그대로 채용하면서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만 추가 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심미감이 극히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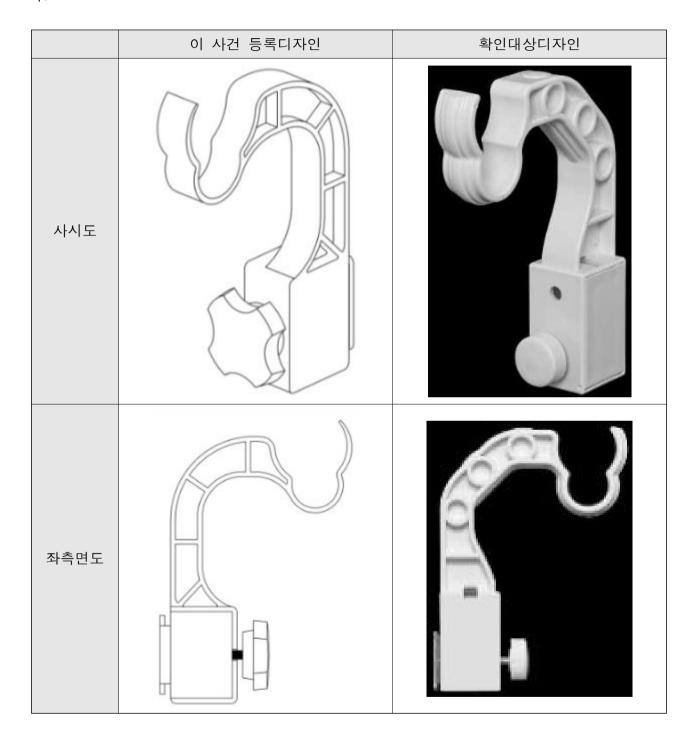
1) 대상 물품의 동일 · 유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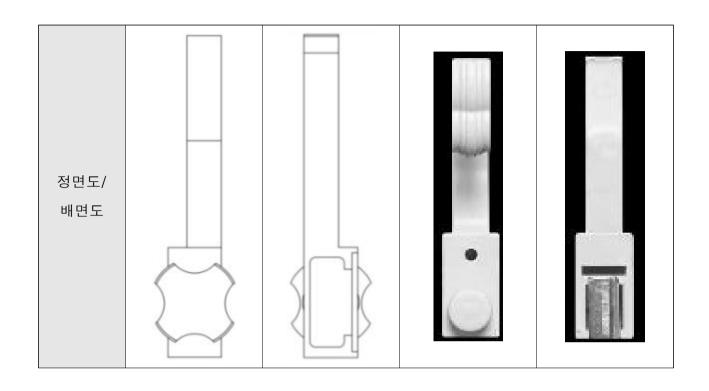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창틀을 압박하여 고정한 후 커튼봉을 안착시킬 수 있어서 창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커튼봉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커튼봉 고정구'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

다.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① 전체적으로 창틀에 결합하는 직육면체 모양의 '창틀 고정부', 창틀 고정부의 위쪽으로 연장되어 커튼봉 안착부에 연결되는 굽은 목 모양의 '연결부' 및 연결부 위쪽 부분에 측면 방향으로 연결되고 커튼봉을 끼울 수 있도록 상부가 개방된 원 모양의 '커튼봉 안착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창틀 고정부는, 직육면체 형상을 가진 본체의 전면에는 노브(knob)가 돌출하여 결합되어 있고, 후면에는 밀착판이 결합되어 있는 점, ③ 연결부는 창틀 고정부의 윗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다가 커튼봉 안착부가 창틀 고정부의 수직 연장선 밖으로 돌출하여 배치되도록 굴곡되어 커튼봉 안착부의 측면에 연결되는데,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창틀 고정부와 연결

되는 하부는 상대적으로 넓고, 지지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내·외부에 테두리 벽과 테두리 벽 사이에 여러 개의 격벽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커튼봉 안착부는 지름이 상대적으로 큰 원형의 곡면과 지름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형의 곡면이 위·아래로 결합되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커튼봉은 위쪽 곡면의 개방된 상부로 진입하여 지름이 작은 아래쪽 원에 안착되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나) 차이점

그러나 ① 창틀 고정부의 전면에 형성된 노브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 '와 같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바퀴 형상으로, 상하좌우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전면 중앙에 한 개의 노브 결합공이 형성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은 '의 같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원 형상이고, 본체의 전면에 노브의 결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2개의 노브 결합공이 상·하로 형성된 점, ⓒ 창틀 고정

부의 후면에 형성된 밀착판 결합공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 우측에 세로 방향으로 1개가 형성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좌

측과 우측에 세로 방향으로 2개, 상측에 가로 방향 1개가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연결부는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되는 부분부터 중앙 부분까지는 곡선으로 형성되고 중앙 부분부터는 수직으로 형성되어 창틀 고정부와 연결되며, 내·외부 테두리 벽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일자

모양의 격벽이 형성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연결부는



'와 같이 수평-경

사-수직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직선으로 형성되고, 테두리 벽 사이에 3개의 원기둥 모양의 격벽과 그 하부에는 1개의 일자 모양의 격벽이 형성된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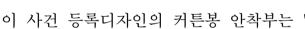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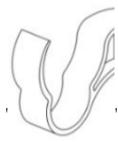
'와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쳐 연결되는 반면, 확인



대상디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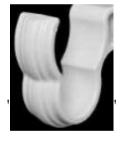
'와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중앙 부분과 연결되는 점, 🗊





'와 같이 평판으로 이루어져 그

단면은 직사각형 형상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커튼봉 안착부는



와 같이 외면에 3단으로 굴곡이 형성되어 그 단면은 사다리꼴과 유사한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 (1) 갑 제6, 7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창틀고정부, 연결부 및 커튼봉 안착부가 일체로 형성된 커튼봉 고정구가 공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커튼봉 고정구가 창틀 또는 벽면에 고정하기 위한 창틀 고정부, 커튼봉을 안착하기 위한 커튼봉 안착부로 구성되어 있고(공통점 ①) 하중을 견디기 위한 형

상을 갖고 있는 것(공통점 ③)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이미 널리 사용되어 온 '커튼봉 고정구'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 디자인에서 창틀 고정부, 연결부, 커튼봉 안착부의 형상과 모양 및 그 결합 형태를 중심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 (2) 직육면체 모양의 창틀 고정부(공통점 ②), 크기가 다른 원형의 곡면이 위·아래 2단으로 결합된 커튼봉 안착부(공통점 ④), 창틀 고정부의 상면과 커튼봉 안착부의 측면을 연결하되 커튼봉 안착부가 창틀 고정부의 수직 연장선 밖으로 돌출하여배치되도록 굴곡된 연결부(공통점 ③)의 형상과 모양은 종래 커튼봉 고정구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
 - (3) 한편 양 디자인은 창틀 고정부 노브의 형상 및 그 크기, 노브 결합공의 수

및 그 형성 위치(차이점 ①), 창틀 고정부 밀착판 결합공의 수, 그 형성 방향 및 위치 (차이점 ⓒ), 연결부의 굴곡진 형태 및 격벽의 모양(차이점 ⓒ),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에 연결되는 위치(차이점 ⓒ), 커튼봉 안착부의 굴곡 형성 여부(차이점 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①에서 ⑩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 창틀을 압박하여 대상 물품을 고정하는 노브의 형상과 모양 및 그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노브를 본체에 결합시키는 공간을 추가로 형성하고 그 형성 위치를 변경하는 것(차이점 ⑤) D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에는 곡선의 태두리 벽 사이에 일자 모양의 격벽이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심미감을, 확인대상디자인의 연결부에는 직선의 태두리 벽 사이에 원기둥 모양의 격벽이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심미감을, 확인대상디자인의 연결부에는 직선의 태두리 벽 사이에 원기둥 모양의 격벽이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심미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틀 고정부의 상면에서 수직으로 연장되되 커튼봉 안착부가 창틀 고정부의 수직 연장선밖으로 돌출하여 배치되도록 굴곡되어 커튼봉 안착부가 창틀 고정부의 수직 연장선밖으로 돌출하여 배치되도록 굴곡되어 커튼봉 안착부의 측면으로 연결된다는 특징이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연결부에 형성된 격벽의 위와 같은 차이가 지배적인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노브는

¹⁾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종래부터 부재를 보강하기 위하여 부재에 판 모양 또는 원 모양의 격벽을 부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지름이 창틀 고정부의 폭보다 작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노브가 본체의 전면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브 결합공은 관찰되지 않고, 노브 결합공은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추가로 노브 결합공을 형성하였고(차이점 ①) 이로 인하여 노브가 본체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커튼봉고정구는 창틀 고정부를 창틀에 결합하여 설치한 후 커튼봉 안착부에 커튼봉을 위치시켜 사용한다. 위와 같이 커튼봉 고정구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창틀에 결합하는 창틀 고정부의 후면 부분은 인식하기 어려워 창틀 고정부 밀착판 결합공의 수, 그 형성 방향 및 위치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점 ⑥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만을 볼 때에만 비로소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위와 같이 밀착판 결합공이형성되어 있어 창틀의 상측에 설치할 수 없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확인대상디자인은 창틀의 좌ㆍ우측 및 상측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와 같이 커튼봉 고정구를 설치한 후에는 커튼의 후면에 위치하

게 되어 관찰되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i) 양 디자인의 연결부는 창틀 고정부의 상면에서 수직으로 연장되다가 굴곡되어 창틀 고정부의 수직 연장선 밖에서 커튼봉 안착부의 측면에 연결되는데, 커튼봉 안착부의 측면과 연결되는 부분부터 연결부의 중앙 부분까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다(차이점 ©). 그런데 확인대상디자인 연결부의 양 측면 내·외부 테두리 벽의 형상으로 인하여 연결부의 모양이 수평-경사-수직으로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경우 상대적으로 각진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은아니다. 또한 양 디자인의 연결부는 창틀 고정부의 수직 연장선 밖에서 커튼봉 안착부의 측면에 연결된다는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 ©으로 인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이트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차이점 ②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쳐 연결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중앙 부분과 연결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 정도에 불과하고, 해당 물품을 자세 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m)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큰 원형의 곡면과 작은 원형의 곡면이 위·아래 2

단으로 결합된 형상으로 구성된 커튼봉 안착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양 디자인의 커튼봉 안착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외면에 굴곡이 형성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커튼봉 안착부부터 연결부 중단 부분까지 그 외면에 3단으로 굴곡이 형성되어 있어 독특한 형상으로 노출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배적인 특징인 위·아래 2단으로 결합된 곡면 형상이 유사한 이상 위와 같은 변형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점 ①에서 ②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②, ③, ④로 인하여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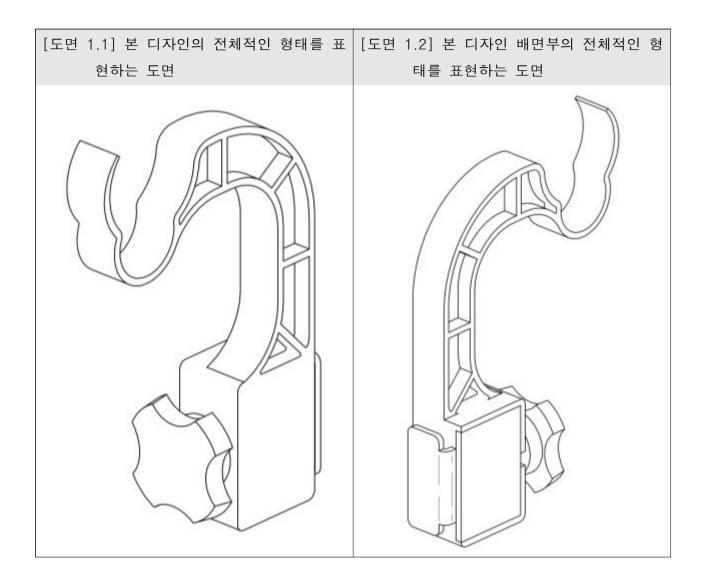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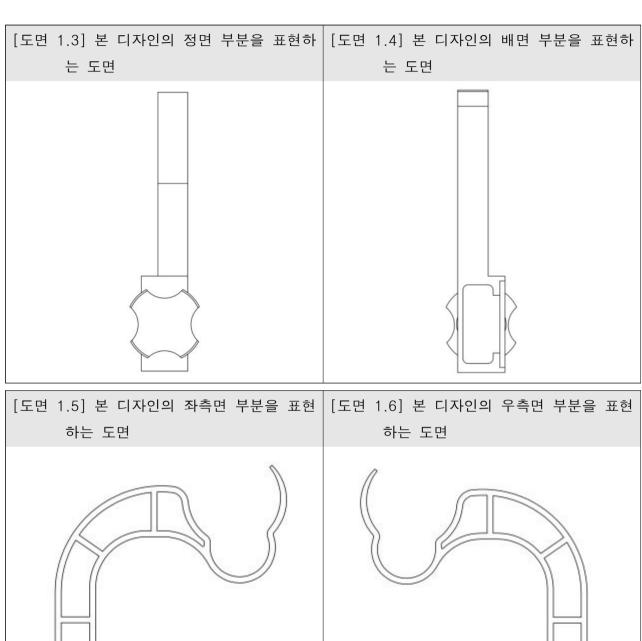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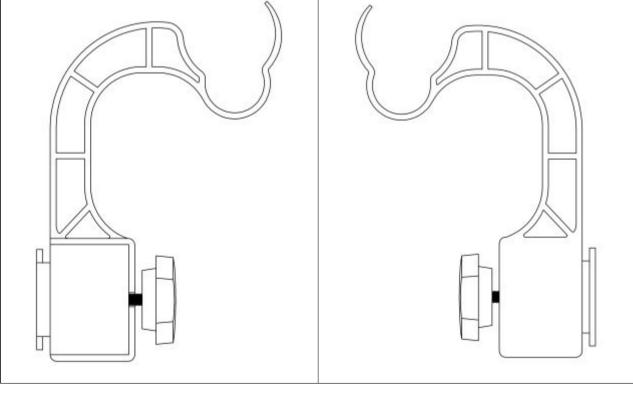
-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 2. 본 디자인은 참고도면 1.1과 같이 창틀의 측면부에 결합되는 커튼봉 고정구로서, 창틀의 손상 없이 커튼봉을 고정하는 것임.
-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도면 1.2는 본 디자인 배면부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8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1.9는 본 디자인은 창틀 고정부가 분리된 상태를 표현하는 분해도, 참고도면 1.1은 창틀을 압박하여 고정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사용상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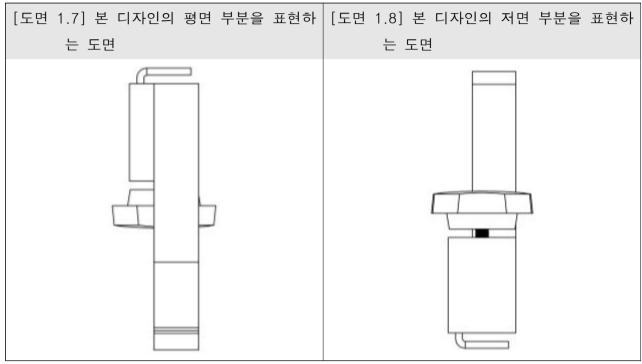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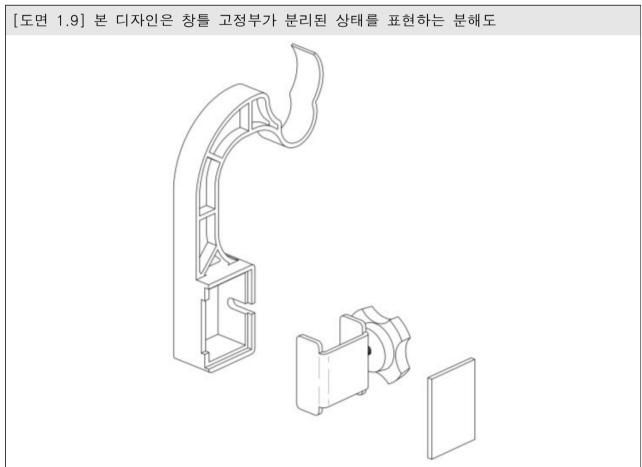
본 디자인 '커튼봉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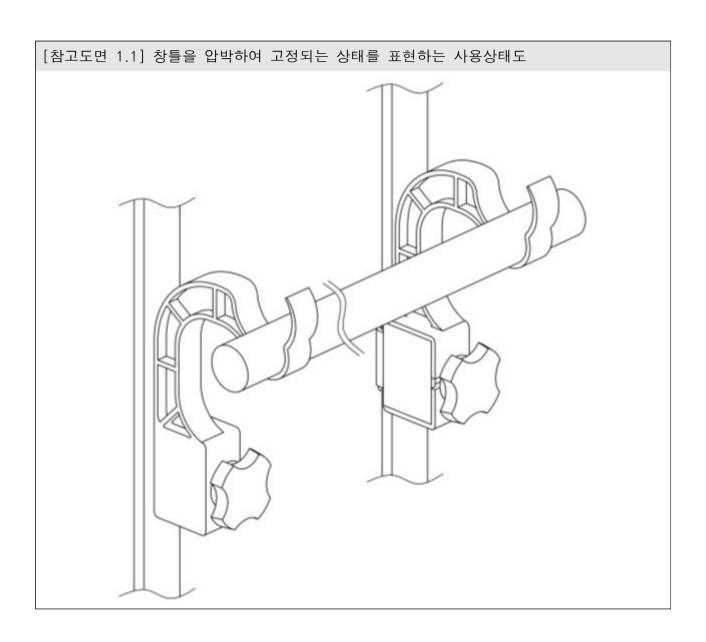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물품의 명칭】커튼봉 고정구



